

공적 자료에 의한 보도의 법적 책임

안상운
변호사

I. 들어가는 말

정부의 발표를 근거로 보도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 이를 보도한 언론기관은 법적 책임을 지는가.

정부는 정부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장부시책 등을 설명한 보도자료 등을 기자나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조직상으로는 국내외의 홍보·여론조사·언론 및 보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보처를 두어 국무위원인 장관을 임명하고 있고(정부조직법 제 26 조의 2) 정부 각 부처에 공보관실을 두고 있으며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시책의 추진현황이 나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할 중요사항으로서 중요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국무회의규정 제 3 조 제 6 항 제 3 · 4 호). 심지어 판사는 판결로만 말한다는 사법부나 수사의 기밀을 유난히 강조하는 대검찰청에서도 최근 공보관을 신설하였다.

박종수가 서울신문, 동아일보, 한겨레신문을 대상으로 하여 1991.1.22.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북한, 국제관련 기사를 분석한 연구결과 1)에 의하면 한국 신문이 정보를 수집 하는 채널에 관하여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의 공식보도를 통한 공식적 채널 기사가 381 건으로 36.7%를 차지하고 있고 공식 입장이 아닌 비공식 절차 보도나 유출보도, 제 3 자 논평 등과 같은 비공식 채널 기사가 321 건으로 30% 정도를, 기자가 사건에 대해 자료 조사를 하거나 인터뷰, 분석을 행하는 등 자발적인 취재형식을 취하는 기사가 312 건으로 29% 정도를, 독자의견이 32 건으로 3.0%를, 불확실한 채널 기사가 19 건으로 1.8%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 정부기관의 공식보도가 349 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공식 절차 보도가 250 건으로 두번째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자 자신의 분석 이 192 건을 차지 하고 있다고 한다. 위 연구에 의하면 심지어 국회의원 뇌물외유 사건이나 수서 사건과 같이 정부가 바로 비난의 대상인 경우에도 정부에 대한 채널 의존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면, 보도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신문이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좀더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위 해서는 정부쪽에 편중된 정보 소스에서 벗어나 채널 및 정보원의 다양화가 요구된다고 한다.2)

또한 한국언론연구원의 조사 3)에 의하면 오보의 원인이 기자의 부주의(41%), 미디어 간의 지나친 경쟁(20.4%), 기자의 전문성 결여(15.2%), 뉴스원측의 부정확한 정보제공(12.6%)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정부의 행정상 발표(공표)의 법적 의미와 그에 근거하여 보도한 언론기관의 법적 책임의 내용과 그 한계를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공무원의 행정상 공표에 대한 법적 검토

1. 행정상 공표의 의의와 법적 성질

행정상 공표란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위반상황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행위를 말한다.4) 고액의 조세체납자의 성명·체납현황·체납자의 사업명 등을 공개한다거나(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 104 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업소를 공시하는 등은 그 예다.

공표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상태의 존부를 다중에게 알리는 데 그치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통지에 불과하며 직접적으로는 상대방의 수치심과 사업상의 불이익 등을 불러일으킬 사회적 제재(social sanction) 내지 명예벌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성질상 행정상의 제재에 해당하는 것이다.5)

2. 행정상 공표의 법적 근거와 한계

행정상 공표의 법적 근거를 고려할 때는,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인격 권과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상반된 법적 이익이 충돌할 우려가 많으므로 양자의 법익형량이 필요하다. 더욱이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기밀을 공표하는 것은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적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공표는 법률의 근거 6)가 있어야 한다 7)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과 상충될 수 있는 행정상의 공표는 법의 우위의 원칙에 따라 법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법규상의 한계내에서 허용된다. 공표는 그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등 행정상의 비례원칙에 의한 한계가 있다.8)

3. 행정공개주의 원칙과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

반면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국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 등은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됨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헌법은 의사공개에 원칙에 의하여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고(제 50 조 제 1 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대의정치가 책임정치와 구현을 그 이념적 기초로 하고 대의 기관에 맡겨진 통치권의 행사가 국민의 통제에 의해서 순화되고 정당화되어야 하는 까닭에 필요한 것이다.9) 그런데 회의 공개는 완전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이 없이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회의공개원칙을 살리기 위한 전제조건에 속한다. 이처럼 대의제도는 결과적으로 공개정치의 실현과 언론·출판의 자유의 신장에 기여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것 이고 또 대표적인 대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의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의사공개의 원칙과 의원의 면책특권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 반면 우리 헌법은 다른 한편으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제 21 조 제 4 항) 또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헌법 제 17 조) 는 헌법적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행정작용이나 행정공개주의에 의한 공표로 인하여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권 등이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의사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헌법 제 50 조 단서 및 국회법 제 75 조 제 1 항, 제 54 조의 2) 이러한 경우 그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지 않는다(국회 법 제 118 조 제 4 항).

4.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제 7 조 제 1 항) 이러한 공무원의 공법상 충성의무로부터 기본권 수호를 위한 공무원의 의무가 생기며 그것의 하나로서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국가 공무원법 제 60 조, 지방공무원법 제 52 조, 국가안전기획부법 제 13 조 제 1 항,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제 17 조).

특히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 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증인이나 감정인으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심문할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관청 또는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 276 조, 제 305 조 및 형사소송법 제 147 조, 제 177 조).

이러한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수단인 정보공개제도와 상충될 소지가 많다.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정보공개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III. 공적 자료에 의한 보도와 명예훼손

1. 명예훼손의 의의

명예란 사람이 사회에서 가지는 지위, 다시 말하여 각인이 그 품성·덕행·명성·신용등에 관하여 세인으로부터 상당히 받을 수 있는 평가를 말한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뜻한다.10) 사람의 경제적인 지불능력 및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법익인 신용도 광의의 명예에 속한다.11)

2.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조항인 민법 제 750 조의 요건 즉,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가 위법하느냐는 것인데 실제로는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사유 즉 위법성 조각사유(민법 제 761 조 및 형법 제 20 조 내지 제 24 조)의 존부문제가 더 중요하다.

3. 행정기관의 발표와 그 보도에 대한 법적 책임

가. 먼저 행정법규에서 공표나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공표 또는 보도를 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예컨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예방과 그 감염자치 보호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자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 7 조, 제 27 조) 결핵환자에 대한 건강진단 또는 예방접종을 한 자도 이를 누설할 수 없는데도(결핵 예방법 제 41 조) 행정기관이 에이즈 감염자나 결핵환자의 인적 사항을 보도자료 등의 형식으로 발표한다거나 또는 언론기관이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보도한 경우에 발표나 공개 또는 보도행위 자체가 당해인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위와 같은 보도 또는 누설금지의 법규정이 없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는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고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죄 및 공무원의 비밀누설죄(형법 제 127 조)의 해당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1) 국가기관이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언론을 포함한 사인(사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상당성의 원칙). 그런데 이러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실명공표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주의 의무와 공권력의 광범한 사실 조사능력,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 법령준수의무 등에 비추어, 사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¹²⁾ 또 보도자료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러한 실명공표가 오로지 공익목적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공표의 대상자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민사상의 손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형법상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 그런데 여기서의 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것을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나 공공단체가 일정한 이익을 가지는 것 중 법령에 의하여 특히 비밀로 할 것이 요구되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즉 그것이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는지, 또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¹³⁾

다. 행정기관의 발표에 근거한 언론기관의 보도의 법적 책임

행정기관의 발표내용이나 공무원이 누설한 비밀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언론기관이 그 발표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였다면 언론기관은 그 발표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 이므로 원칙 적으로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사법기관 14)의 발표와 그 보도에 대한 법적 책임

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공표죄

(1) 헌법 제 27 조 제 4 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최소한의 구성요소이며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권 질서의 가치적인 핵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질서 내에서 국가적인 형벌작용의 필연적인 기속원리다.¹⁵⁾ 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피고인 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 더 나아가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2)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의사실공표죄를 들 수 있다. 형법 제 126 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소송법 제 198 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주의규정을 두고 있다. ¹⁶⁾

(3) 피의사실공표죄는 한편으로는 수사단계에 있어서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 피의자 혹은 그와 이해관계 있는 자에 의하여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곤란을 초래하여 국가의 수사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소제기 전의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사실을 소송법상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미확실한 피의사실이

일방적으로 공표됨으로써 피의자가 받을 사회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개인적 명예와 인권을 옹호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4) 그러나 본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다.

즉,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의자나 피고인은 무죄가 추정되므로, 그 이전에 혐의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일응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인격의 존엄과 그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개인의 명예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그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지만, 헌법상 다른 권리와 제도, 예컨대 언론의 자유 및 그와 표리의 관계에 있는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재판공개 원칙 등 공공의 이익이 더 우월한 경우도 많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언론기관이 확정판결 이전에 혐의사실을 보도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성립 한다고 볼 수는 없다.¹⁷⁾

따라서 피의자가 도주 피신하여 수사에 곤란을 겪고 있을 때에 시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라디오·텔레비전·신문지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라든가, 포악한 범인이 도주하여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의혹을 품게 되는 경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¹⁸⁾

나. 발표 또는 보도의 금지규정이 있는 경우

실정법상 사법기관의 발표나 언론기관의 보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위반하여 발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1) 먼저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그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하지 못한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 조). 또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의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1 조)

(2) 다음으로 재판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가정 법원에서 처리 중에 있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용모 등에 의하여 그 본인임을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고(가사소송법 제 10 조, 제 72 조), 소년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같다(소년법 제 68 조).

다. 발표 또는 보도의 금지규정이 없는 경우

범죄피의사실의 수사나 피의자의 체포에 즈음하여 수사기관이 신문기자 등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것이 신문등에 보도됨으로 인하여 피의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피의자는 피의사실을 공표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¹⁹⁾

다만 피의사실에 관한 수사관의 발표는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고(일본형법 제 230 조의 2 제 2 항) 공익 목적으로 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형법 제 310 조를 유추적용하여 발표사실이 진실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고, 설사 진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도 수사관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수사당국은 면책된다. 그러나 수사발표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없다.²⁰⁾ 또한 수사결과가 수사기관의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도출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하여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²¹⁾

한편 수사기관의 수사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기관도 상당성의 원칙에 의해 그 책임여부가 정해진다.

5. 명예훼손책임에 대한 면책사유

가. 면책사유로서의 진실증명

(1) 진실증명의 의미

일반적으로 언론기관의 보도행위가 명예훼손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형법 제 20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된다. 그런데 명예훼손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진실성」의 여부이다. 진실성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없다는 것은 비교법 적으로도 널리 승인되고 있는 사항이며 우리 형법 제 310 조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민사에도 유추적용되고 있다.²²⁾

(2) 형법 제 310 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첫째 보도한 사실이 사회 일반의 다수인의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이어야 하고(사실의 공공성)²³⁾ 둘째 적시된 사실이 사사로운 사실이 아닌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며(사실의 공익성)²⁴⁾ 셋째 적시된 것은 적어도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이어야 한다(사실의 진실성).²⁵⁾

(3) 오늘날 명예훼손이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신문 · TV · 라디오 · 잡지 등 대중보도매체 즉, 매스컴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이다. 보도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할 의무가 있으나 그 반면 취재시간의 부족이나 정보에의 접근의 어려움 등 취재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보도 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함께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이 충돌할 경우 어느 기본권이 우선하는지, 또 두 기본권의 조화점은 어디인가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도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형법 제 310 조의 규정이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 21 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²⁶⁾

(4) 그렇다면 과연 상당성 원칙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적시하는 사실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우선 발표나 보도를 하게 된 확실한 자료, 근거(정보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행위자가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인 경우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보도한 사실이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의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27) 진실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있어야 할 것 28)이나, 그 한계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행위자가 누구인가(신문인가 잡지 인가 또는 일간인가 월간인가), 기사의 성격이 무엇인가(신속성을 요하는 보도기사인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준비 하는 기획 기사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29),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았는가 30) (최소한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는가), 진실확인이 용이한 사항인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별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31)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도의 행위자에게 있다.

(5) 특히 자주 문제되는 것이 언론기관에 의한 범죄보도의 경우 32)인데, 판례를 기초로 이를 유형화하여 일응의 기준을 설정해 보면 33), 첫째 수사당국의 공식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는 정보원의 신뢰도가 높고, 보도의 신속성의 요구, 사실 탐지능력의 한계,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어 직접 취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뒷받침 조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진실이라고 오신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34), 둘째 비록 수사당국의 공식발표는 없더라도 취재기자가 충분한 조사를 하여 나름대로의 진실 확인작업을 한 뒤 기사화한 경우에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35)고 할 것이다.

반면, 첫째 수사당국의 공식발표가 있기 전에 수사당국으로부터 비공식으로 취재를 하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보도한 경우 36)나, 둘째 수사당국의 발표가 없고 사실의 진위가 불명확한 경우나 보도에 긴급성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재기자가 충분한 이면조사를 하는 등 취재 보도 37)에 관하여 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경우 36), 셋째 당국의 공식발표에 따른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당국의 발표를 오해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거나, 보도기관이 과장 또는 각색하여 단정적으로 보도하거나(예컨대 사기혐의를 받고 있음에 불과한데도 사기범이라고 보도 39)), 자기의 견해 40)나 억측을 첨가하여 보도하는 경우 41), 넷째, 편집과정에서 윤색이 되어 본문기사와 의미가 달라진 경우에는 모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에 반하여 수사당국이나 공무원의 발표에 대하여는 진실성의 유무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무의 정도가 더 엄격히 요구된다.42)

나. 면책특권

(1) 특권의 종류와 내용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진술을 발표하는 자는 자기의 위험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선의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진실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회생활상 일정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위험에서 벗어나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영역이 있다. 이 같은 영역에 특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43)

특권에는 절대적 특권과 제한적 특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별할 수 있다. 절대적 특권(absolute privilege)은 명예훼손의 소를 전혀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언론의 자유가 중요시되는 경우로서 아무리 거짓된 진술이거나·발표자의 동기가 매우 악의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이고, 제한적 특권(qualified privilege)은 발표자가 선의로서 악의없이 발표하였음을 조건으로 하여, 허위의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면책되는 경우이다. 제한적 특권에 있어서 피해자가 악의를 입증하면 발표 또는 보도자의 특권은 배척된다.⁴⁴⁾

영미법상 절대적 특권으로는 ① 의회의원이 의회 내에서 한 진술, ② 의회가 발행한 보고서, 의사록 등의 내용, ③ 소송절차에 있어서 판사, 배심원, 변호사, 당사자 또는 증인인 한 그 소송에 관한 진술, ④ 사무변호사(Solicitor)와 의뢰자(Client)사이의 직무상 통신중의 진술, ⑤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한 그 직무와 관련된 진술, ⑥ 공판절차에 관하여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 등이, 제한적 특권으로는 ①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 ② 발표자의 이익에 관한 사항, ③ 타인의 이익에 관한 사항, ④ 공통이익에 관한 사항 등이 각 인정 되고 있다.⁴⁵⁾

(2) 공적 발표와 그에 근거한 보도의 면책여부 위와 같이 영미법상 공무원 특히 연방공무원 및 주의 고급공무원은 그의 직무상 발언에 대하여는 절대적 면책특권을 갖는데 이에 근거하여 미연방대법원은 그 유명한 The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사건 46)에서 「공무원이 그의 공무집행에 대하여 가해진 명예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공무원 자신이 그 보도가 (현실적 악의) (actual malice : 허위인줄 알면서도 한다거나 또는 그것이 허위인가 어떤가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고 전혀 무시하는 태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연방규칙을 요구한다」고 판결하였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하여 한 발언이 절대적인 특권으로 인정되는 것 47)과 똑같이 일반국민이 공무원의 행동을 비판하는 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공무원의 발인에 대하여 절대적 특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위협이 청부정책의 용기있고 활발하고 효과적인 집행을 저해하며 또 가장 결연(결연)한 공무원과 가장 무책임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선량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때로는 직무 자체로부터의 사임까지도 주저치 않게 만들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와 똑같은 배려가 정부를 비판한 시민들에 대하여서도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절대적인 권리로 규정한 것과 달리 언론자유 헌법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고 또 정보공개 법이나 의회회의록공개법, 프라이버시보호법 등 기본권 보장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법환경을 감안한다면 위 미연방대법원의 논거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아직 무리 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오히려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및 법령준수의무 등을 이유로 공무원의 발표에 대하여 엄격한 주의의무를 요구 하고 있다.

(3) 국회의원의 발언 보도와 면책

다만 우리나라 헌법 제 45 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절대적인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행한 발언이 설사 제 3자의 명예를 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가의 여부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 또는 비방의 목적이 있는가를 불문하고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⁴⁸⁾ 그러므로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경우 언론기관은 면책된다.

반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면책규정이 없고 오히려 지방자치법 제 75 조 제 1 항이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회의원과 같은 절대적 면책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⁴⁹⁾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의 의회 내 발언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⁵⁰⁾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발언이 직무상 불가피하거나 또는 직무와 관련되고 비방 등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정당한 직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이다.⁵¹⁾

(4) 법정에서의 소송관계인의 발언 보도와 면책

소송에 있어서 소송관계인(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증인 등)이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때로는 상대방이나 제 3 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또 이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이 면책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변론주의·당사자주의를 기초로 하는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기탄없이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특히 악의를 가지고 행하여진 발언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위법성을 조각한다.⁵²⁾

따라서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진 소송관계인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경우 특별한 보도금지의 규정이 없는 한 언론기관은 면책된다 할 것이나 그것을 과장 또는 각색하거나 그것에 자기의 견해나 억측을 첨가하여 보도한 경우에는 면책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판결의 경우에는 통상 그 공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⁵³⁾

(5) 그 밖의 면책사유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거나(형법 제 24 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형법 제 20 조)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의 인터뷰를 충실히 보도한 경우 설사 그 내용이 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언론기관은 면책된다.

IV. 공적 자료에 의한 보조와 정정보도청구권

1. 정정보도청구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정정(반박)보도청구권이란 정기간행물 54)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이 발행인이나 편집인에 대하여 그 피해자의 사실적 주장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16 조).

다시 말해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 55)이므로 이의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는 그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다.56)

2.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요건

우선 정정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 방송, 종합유선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을 것(사실적 주장성)이 요구된다.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표현적 보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청구권이 부인된다. 57) 정정보도의 요구도 사실적 보도에 대한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된다(정간법 제 16 조 제 4 항).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인 경우 그것이 신문의 논설이거나 가십기사 58), 잡지의 표지나 목차 55), 방송의 논평·해설도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며 그것이 르포기사이든, 독자투고이든 60), 외부 인사의 청탁원고에 따른 기사이든, 공공단체 등으로부터의 보도자료에 기한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

다음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자기의 인격권 등 권리가 침해당하여 그에게 피해가 발생함을 요하는데(개별적 관련성), 이 경우 언론으로부터 공격받았다거나 직접적인 침해를 받은 경우만으로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언론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관련되었다거나 언급되었다는 것으로도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61)

3. 공적 자료에 의한 보도와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여부

가. 일반원칙

언론기관의 사실적 주장에 대한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는 그와 같은 보도의 채널이 공식적 채널에 의한 것이든, 비공식적 채널에 의한 것이든 관계없이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발표에 의하여 또는 검찰 62)이나 경찰 63), 안기부 64) 등 사법기관의 발표에 의하여 보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다.65) 심지어 대통령의 공적인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66) 공적 자료에 근거하여 충실히 보도한 경우 언론기관은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 보도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어 면책되지만, 정정보도청구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당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67)

나. 언론기관의 면책사유

(1) 첫째,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그것이 언론의 의견적 주장에 대한 것인 때에는 면책된다.

(2)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도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정간법 제 16 조 제 6 항).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언론이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보도의 형식으로 보도하지 아니하고 언론기관이 스스로 지득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다.68)

(3) 셋째, 청구된 정정보도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일 경우 69)에도 언론기관은 면책된다.

정정보도청구권이 형식적 권리라는 성격상 그 발생을 위해 원 보도의 내용이 진실민가의 여부는 원칙상 문제되지 않으나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때에는 그것의 보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권리남용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70) (정간법 제 16 조 제 3 항 단서). 민사소송법상 공지의 사실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예시될 수 있다 71)(제 261 조).

(4) 넷째, 청구된 정정보도가 위법한 내용일 경우도 면책된다(정간법 제 16 조 제 4 항 후단). 위법한 내용이란 형사상 처벌받게 되는 내용과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이다. 청구된 정정보도문이 제 3 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민사상 불법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도 정정보도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5) 다섯째, 언론기관은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의 행사에 있어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72) (정간법 제 16 조 제 3 항 단서).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로는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위 단서), 원문기사나 정정보도의 내용이 지엽말단적인 사항인 경우 73), 정정보도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불합리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경우, 정정보도의 내용이 독자를 기만하거나 오히려 오해를 유발하는 경우, 정정보도의 내용이 자기의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원문보도와 관계 없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경우, 원문보도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충분한 반박의 기회를 준 경우 74), 속보에 의하여 언론 스스로 원문보도를 정정한 경우 75) 등을 들 수 있다.

(6) 여섯째,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청구는 거부 된다. 76) 현행법상 광고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77)와, 또 편집부분과 광고부분을 엄별하는 언론계의 관행에 비추어 본다면, 편집부분의 사실주장에 대한 반론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의 정정보도청구를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4. 공적 자료에 의한 보도와 추후보도청구권 78)

가. 추후보도청구권의 의의와 인정 필요성

정기간행물이나 방송, 종합유선방송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정간법 제 20 조 제 1 항, 방송법 제 42 조, 종합유선방송법 제 45 조 제 9 항).

일반적으로 언론매체에 의한 인권침해는 범죄보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일단 언론이 누구가 구속 또는 입건되었다거나 내사 중이라는 등 보도를 한 경우

「출두=사법처리=구속=유죄」라는 법 관념에 익숙해져 있는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그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죄추정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언론보도 후 피해자의 무고함이 밝혀진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의 대전제 하에

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 보장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추후보도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 공적 자료에 의한 보도와 추후보도청구권의 성립여부

언론기관의 형사상 사건에 대한 보도가 검찰이나 경찰, 안기부, 기무사 등 수사기관의 공식적 수사발표에 기한 것이거나 또는 위 수사기관이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근거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무죄재판이 확정된 경우 79)에는 그에 대한 추후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보도 당시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진실에 부합하였는가의 여부는 추후보도청구권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그 보도에 대하여 이미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였더라도 나중에 무혐의나 무죄 등으로 종결된 때에는 다시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VI. 맺는 말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 등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발표에 의한 경우 이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기관은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정정보도게재의무까지 당연히 면할 수는 없다. 더욱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발표라고 하더라도 취재기자나 편집자 등이 위 발표내용을 왜곡 ·과색 ·과장하거나 자신의 주관적인 편해나 억측을 첨가하여 보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까지도 져야 한다. 국가기관의 비공식적 발표나 공무원의 견해를 기사화하는 경우에도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언론기관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실확인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또 반대 당사자측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불편부당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사건보도의 취재에 있어 언론기관은 수사기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습에서 벗어나 보다 취재원을 다양화하여 그로부터 얻은 정보를 증명취재로 뒷받침 하고, 수사기관과 피의자· 피고인측의 주장을 대등한 비중으로 보도하여 일방적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

또 기사작성에 있어서는 사건의 사회적 의미와의 관련하에 그 보도가치에 대한 보다 올바른 판단을 기초로, 필요한 내용만을 기사화하는 자세와 능력이 필요하며 기사작성에 있어서 작성자의 주관의 재입을 배제시켜 객관보도주최를 철저화 할 것이 요구된다. 언론기관이 독자와 호기심에 영합하는 당리의 집착에서 벗어나 언론기관 상호간의 경쟁을 지양하고 그 공공적 사명을 자각하여 직업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

- 1) 박종수, 「한국신문의 기사 분석」, 언론의 윤리강령과 보도기준(연구서 14), 한국언론연구원, 1991, PP.114~5.
- 2) Ibid, p.203.
- 3)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오보사례연구-정부시책 보도를 중심으로-(조사연구 92~4), 1992. 11, p.33.
- 4) 이상미, 신행정법론(상), 병문사, 1989, p.469.

- 5) Ibid
- 6) 예컨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14 조 제 1 항.
- 7) 이상규, op. cit., p.470.
- 8)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1995, p.552.
- 9)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0, p.638.
- 10)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 다 756 호 판결
- 11) 대법원 1982. 1. 26. 선고 80 다 2524 호 판결
- 12) 대법원 1993. 11. 16. 선고 93 다 18 훈 9 호 판결은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를 한 자로 원고의 명단을 담은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공표함에 의하여 각 일간신문에 원고가 부동산투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된 사안에서 「국세청 예하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막연한 의구심에 근거하여 원고가 위장증여자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요지의 조사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 국세청장이 이를 근거로 보도자료를 만 들어 언론사에 배포한데 있어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 고 하였다.
- 13) 서울고등법원 1994. 4. 27. 선고 91 구 15869 호 판결
- 14) 여기서의 사법기관이갈 사법부 뿐만 아니라 준사법기관인 경찰과 수사권이 있는 경찰, 안기부, 기무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 15) 허영, op. cit., p.350.
- 16) 경찰사건사무규칙 제 7 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 7 조도 같은 취지이다.
- 17) 서울고등법원 1994. 1. 21. 선고 93 나 22236 호 판결
- 18) 손창열, 「범죄보도와 인권침해에 관한 형사적 고찰」, 검찰 1990 년 제 1 집 (통권 100 호), p.438.
- 19) 서울지방법원 1995. 5. 19. 선고 93 가합 54908 호 판결
- 20) 서울고등법원.1990. 1. 19. 선고 89 나 33482 호 판결은 이른바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서 피해자인 권양이 가해자인 문귀동을 형사고소한 데 대하여 정찰이 성고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허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또 당일 안기부가 「권양은 혁명을 위해서는 (성)도 도구화하고 있으며 그녀의 성모욕주장은 인간성의 침해를 빙자하여 대중의 혁명적 투쟁을 선동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 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부천서 사건 공안당국 분석」이라는 육인물을 언론기관에 배포하여 각 일간신문에 육인물의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케 한 행위는 권양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결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21)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2. 선고 92 가합 23099 호 판결(이른바 대흥동 10 세 소년의 동생 살인사건) 「강압적 추궁과 유도심문으로 자백 받아 객관적 검증이나 증거도 없이 진범으로 발표하고 가정에 문제가 많고 불량소년인 것처럼 기자들에게 설명하여 그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다면 이를 발표한 수사관 등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22)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 다카 29 호 판결
- 23) 대 법원 1958. 9. 26. 선고 4291 형 상 3133 호 판결

「신문사의 지사장이 지방 행정당국의 불합리한 처사를 취재보도케 함에 있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여 곧 허위보도라 할 수 없고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명예훼손죄로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 도 1035 호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 도 899 호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 도 1035 호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 도 899 호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2. 27. 선고 91 가합 52649 호 판결(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할수 없다는 사례)

24) 대법원 1993. 6. 6. 선고 93 다 3073, 3080 호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 다 36622 호 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 다카 29 호 판결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 도 3160 호 판결 등

25) 진실성이 부인된 사례로는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 도 237 호 판결 ; 동원 1993. 6. 22. 선고 93 도 1035 호 판결 등이 있다.

26)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 도 3160 호 판결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 형 상 12 호 판결 ; 대 법 원 1988. 10. 11. 선고 85 다카 29 호 판결. 또한 일최판 1969. 6. 25. 판결(이른바 석간화가산논 사건) 이래 일본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27)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 다 36622 호 판결

28)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8. 17. 선고 90 가합 35265 호 판결

29)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2. 27. 선고 91 가합 52649 호 판결

30)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 다 36622 호 판결

31) 한소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사법논집 제 24 집, 법원행정처, 1993, p.426.

대법원 1994.8.26. 선고 94 도 2 정호 판결(상당성이 없다고 한 사건)

32) 손각열, op. cit., pp.414~418.

33) 竹田 掄, 명기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민사책임 연구, 주정서점, 1982, pp.13~44.

34)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4. 29. 선고 87 가합 3739 호 판결

「(신문사인) 피고들은 위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경찰국의 공식발표를 보도자료에 기재편 대로 보도한 이상 그 보도내용 중에 원고가 전과 7 범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35)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 도 3160 호 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4. 11. 선고 82 가합 4734 호 판결

36)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8. 17 선고 90 가합 35265 호 판결

『취재기자가 치안본부 대공과 소속의 경찰간부로부터 「임수경의 입북과정에 공작조직이 개입하였을 개연성이 높는데 원고가 거론되었다」 는 정보를 듣고 다른 경찰간부로부터

「성남의 재야인사가 틀림없이 임양의 입북을 도와주었을 것이다」 는 정보를 얻은 후 위 각 정보가 진실한 내용인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 정보를 종합하여 원고가 북한의

국내공작조직의 일원이라고 추측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했으니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37)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11. 9. 선고 90 가합 15032 호 판결

38) 대법원 1988.10.11 선고 85 다카 29 호 판결

서울고등법 원 1991.9.25. 선고, 91 나 27320 호 판결

「고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당시 원고가 대통령 경호과장도 아니었고 사건현장에 간 일조차 없음에도 주간시사잡지 객원기자인 피고가 타인으로부터 원고가 그 당시 대통령 경호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위 원고에게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가 단편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터잡아 위 암살사건 당시 대통령 경호과장이었던 원고가 위 육영수 여사를 저격 하였거나 그 부하 경호원에게 이를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다면 위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 」

39)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9. 8. 선고 91 가합 78412 호 판결

40)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1. 18. 선고 88 가합 20604 호 판결

「미스코리아 출신의 미혼여성이 전 새마을운동본부 회장과 부도덕한 관계에 있었다는 소문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원고가 위 소문을 부인하는 대답을 하였음에도 그러한 소문이 실제로 있고 그것이 어떠한 근거가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기사를 월간여성지에 게재한 경우에 대하여 위 소문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41)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7. 29. 선고 92 가합 3033 호 판결

4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 다 18389 호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7. 2. 선고 92 가합 23099 호 판결 ; 동원 1988. 4. 29. 선고 87 가합 3739 호 판결

43)塚本重頼, 영미법에 나타난 명예훼손 연구, 중앙대학출판부, 1988, p.82.

44) 박학송, 「영국 사법상의 명예훼손에 관하여」, 재판 자료 제 10 집
외국사법연수논집(3), 법원행정처, 1981, pp.332~339.

45) 미국법에 있어서의 절대적 특권과 상대적 특권에 관하여는 총본중위, op. cit., pp.218~247.

46) 376 U.S. 254(1964)

47) Barr v. Mattes, 360 U.S. 564(1959)

48)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 도 3317 호 판결

49) 동경지판 1989. 1. 30. 판례시보 제 1328 호 p.74.(구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폭언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자의 위 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건)

50) 동경지판 1989. 1. 30. 판례시보 제 1328 호 p.74.

51) 한위수, op. cit., p.432.

52) 일최판 1985. 5. 17 대판고판 1985. 2. 26.

53)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 도 899 호 판결

54) 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다. 방송법 제 41 조 및 종합유선방송법 제 45 조 참조

55) 대법원 1986. 1.28. 선고 85 다카 1973 호 판결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 헌마 165 결정

56) 대 법원 1991. 1. 15. 선고 90 다카 25468 호 판결

- 57)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 5. 24. 선고 83 카 7953 호 판결 ; 동원 1991.10.10. 선고 91 카 81540 호 판결 ; 동원 1990. 5. 25. 선고 89 카 28984 호 판결 :동원 1992. 11. 26. 선고 92 카기 649 호 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1992. 12. 14. 선고 92 카합 3879 호 판결 등
- 58)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2. 13. 고지 94 카기 4983 호 결정
- 59)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25. 고지 94 카기 4881 호 결정 : 동원 1995. 2. 13. 고지 94 카기 4983 호 결정
- 60)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12. 11. 선고 87 카 40175 호 판결
- 61) 서울민사지방법원 1 노 2. 9. IS. 선고 92 카기 474 호 판결
- 63)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26. 고지 94 카기 5463 호 결정 :동원 1995. 2. 20. 고지 94 카기 5716 호 결정 ; 서울지방법원 1995. 5. 2. 선고 94 가합 47709 호 판결 등
- 6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5. 2. 20. 선고 94 카합 3122, 3123 호 판결
- 65) 서울고등법원 1990. 2. 6. 선고 89 나 30506 호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26. 94 카기 5463 호 결정
- 67) 서울고등법원 1963, 11. 17. 선고 82 나 4188 호 판결
- 68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 다카 1973 호 판결
- 69)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5. 25. 선고 89 카 28984 호 판결 동원 1994. 12. 27. 고지 94 카기 4850 호 결정
- 70)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 다카 25468 호 판결
- 71)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3. 9. 6. 선고 93 카합 792 호 판결
- 72)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 다카 818 호 판결
- 7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2. 12. 14. 선고 92 카합 3879 호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1. 26. 고지 92 카기 649 호 결정
- 7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2. 2. 20. 선고 89 카 8917 호 판결 ; 수원지 방법원 1991. 11. 20. 선고 90 카 18577 호 판결
- 75)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12. 29. 선고 89 카 46152 호 판결 ;동원 1990. 7. 19. 선고 90 카 41568 호 판결 :동원 1994. 10. 27. 고지 94 카기 3509 호 결정
- 76) 서울지방법원 1995. 7. 5. 고지 95 카기 1885 호 결정
- 77)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11. 30. 선고 84 카 34374 호 판결
- 78) 이석연, 「판결공시제도와 추후보도청구권」, 언론중재 1992 년 봄호 (통권 제 42 호), 언론중재위원회, pp.19~26.
- 79) 95 서울중재 40 호(중재성립)

- 저술: 「언론의 법적 책임과 언론피해구제제도」, 「공안사건보도의 문제점」, 「현행 영상과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외
- 현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변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